제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3. 9. 제 천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1. 3. 9.
다. 상 정 일 자 : 2011. 3. 15.(제18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홍보전산과장)

가. 제안이유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지역정보화에 관한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정보화를 추진코자함.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제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로 함
○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조 내지 제5조)
○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지역정보화 위원회'로 변경 (안 제6조 내지 제7조)
○ 지역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 책임관의 설치와 기능을 규정함 (안 제8조)
○ 행정의 효율성향상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분야별 정보화를 추진토록 함 (안 제 9조)
○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등과 협력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10조 신설)
○ 시민들에게 지식정보자원의 제공 · 활용토록 함 (안 제13조 신설)
○ 시민과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교육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 14조 신설)
○ 건전한 정보문화창달 및 인터넷 중독의 예방· 해소대책을 추진토록함(안 제15조 신설)
○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근거를 둠(안 제 16조 신설)
○ 정보보호, 보험 및 유지보수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 15조 내지 제20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홍완식)

○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2010.9.23)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 조례명을 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지역정보화 위원회로 명칭변경 및 위원수를 조정하였고
-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분야별 정보화 사업추진과, 민간기관 지원, 지역정보 통합센터 설립, 지식정보 자원의제공·활용, 정보화 교육등 시민들의 정보접근 및 활용촉진을 위한 근거규정들을 신설하였습니다.
- 이밖에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및 인터넷 중독예방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등을 수립추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개정안은 정보화 관련법의 통폐합등 상위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저촉되지 않으며, 지식정보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적법·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답변자 : 홍보전산과장)

○ 질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다른 시군을 다 보니까 도 조례도 그렇고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12명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상귀 위원)

답변) 지금 저희가 위원이 11명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명하고 이번에 시장님이 위원장이 시장이 부시장으로 위원장으로 바뀌면서 한 명을 더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12명으로 했습니다.

○ 질의) 8쪽 정보화 책임관은 8조 2항에 정보화 책임관은 정보화 부서의 장이 된다. 어느 분을 지칭하는 것인가요? (최상귀 위원)

답변) 충청북도나 다른 지역에 예를 보면 국장님 급으로 조정이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운영하는 사항을 보면 현실적으로 통신업무를 담당을 하는 홍보전산과장이 업무가 주기 때문에 홍보전산과장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 기타의견

"없　음"

6. 토론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심사보고 붙임서류

○ 제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안 1부. 끝.